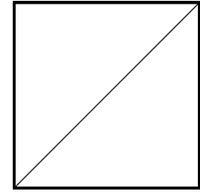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5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4. 5. (제 7 차)

의
결
사
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4. 5.

1. 의결주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 활성화 기능 수행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되어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12. 21. ~ 2023. 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고시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1